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기상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기상서비스진흥국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조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「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」가 개정(대통령령 제00000호, 2021. 12. 00. 공포·시행)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 없음

환경부령 제 호

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를 삭제한다.

별표 10을 삭제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제19조(평가대상 조직) 기상청에</u> <u>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</u> <u>사항은 별표 10과 같다.</u>	<u><삭 제></u>